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신영증권(주)

2. 제재조치일 : 2020.9.28.

3. 제재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개선사항 4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고객확인업무 운영 불합리

① 제3자를 통해 HTS를 신규 개설한 고객이 고위험고객으로 분류되었음에도 고객이 HTS 거래시 강화된 고객확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고, HTS 이용고객의 고객확인 재이행주기가 도래한 경우 고객이 고객정보확인 재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므로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 고객 및 HTS 거래 고객의 재이행 주기 도래시 고객확인 정보를 반드시 입력토록 HTS를 통한 고객확인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② 법인 신규계좌 개설시 시스템상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값과 '법인구분' 분류항목이 연동되지 않아 직원이 비영리법인을 일반법인으로 잘못 분류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구분 분류가 연동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비영리법인 고객확인제도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람

③ □개 은행과 증권계좌 개설대행시 고객확인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개 은행의 경우 고객확인사항이 업무제휴계약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 은행과 업무제휴계약서를 재체결하고, 고객확인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고객확인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무위·수탁 계약 내용 등을 개선하시기 바람

④ 고객이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 도래전에 고객정보를 변경한 경우 동 정보가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의 고객정보에도 반영되어야 함에도, 변경된 고객정보가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의 고객정보와 연동되지 않아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 도래 전까지 고객의 변경된 최신정보가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고객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최신의 고객정보가 자금세탁방지시스템에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2)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운영 미흡

① 현행 내규에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이하 'STR Rule')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검사대상기간중 특정 STR Rule에서 각각 ◎건, □건의 의심스러운 거래 경보가 발생하였음에도 적정성 검토를 이행하지 않아 실제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는 각각 △건, ☆건 수행되었고, 의심스러운 거래 경보가 발생된 총 □건 중 △건만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고되는 등 STR Rule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므로 정기적으로 STR Rule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람

② 검사대상기간중 STR Rule에 해당되어 추출된 건의 ○%를 보고제외하고 있으나 보고책임자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제외 사유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보고 제외 건의 개수만 확인·결재하고 있으므로 보고책임자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제외사유에 대해서도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3)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절차 미흡

① 감사담당부서가 자금세탁방지 업무 수행에 대한 감사는 실시하고 있으나 3년간 감사결과가 거의 동일하게 작성되었고, 자금세탁방지 업무 필수 감사항목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 감사수행자에 따라 감사항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감사 결과 지적사항의 통보절차가 없는 등 감사결과의 사후관리도 미흡하므로

독립적 감사 수행방법 및 감사항목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감사결과의 통지 및 이행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제도를 개선하시기 바람

② 검사대상기간중 '○○.△월~'○○.△월까지 신상품에 대한 AML 위험성 평가(사전검토)를 실시하지 않았고, '○○.△월 AML 사전검토 체크리스트를 신설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없으며, 결재권자의 AML 사전검토에 대한 결재를 하지 않았음에도 신상품 출시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었으므로

신상품 출시전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자금세탁 위험 평가 승인 없이 상품을 출시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4) 위험평가업무 운영 미흡

금융정보분석원 위험평가시스템에 근거자료는 전산으로 입력하고 있으나, 동 위험평가시스템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회사의 업무별 자금세탁위험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자금세탁방지 업무계획 수립시 동 위험평가 결과가 반영되지 않으므로

금융정보분석원 위험평가시스템 입력자료를 바탕으로 회사 전체 업무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위험평가보고서 작성 포함) 이를 근거로 업무별 자금세탁위험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람